

충청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중수정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'94.

발의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수정이유

- 도의회에 제출된 '충청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(안)'이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에만 국한된 협의·조정기능이 주어져 있어,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과 아울러 국제통상 관련사항의 기능을 보강함으로서
- 전면적 국제화, 개방화에 적극 부응하도록 국제통상 및 국제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정의 총체적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함.

2. 주요 수정 골자

- 당초 "국제화추진협의회"의 조례명을 "국제화추진위원회"로 명칭을 변경하여 위원회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심의·조정·의결권을 부여함.
- 국제교류협력에 국한된 위원회 기능을 농업, 특화사업등의 국제화 시책개발, UR, GR 등 국제통상대책추진, 지방과학기술 진흥 방안등을 심의, 조정하는 기능을 보강함.
- 기 제출된 '조례(안)'의 소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변경하며, 위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기관 또는 단체등의 실무관계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토록하였음.
- 위원회의 기능 수행시 필요한 경우 공청회, 세미나 뿐만아니라, 국제통상 및 교류협력에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자의 의견을 들을수 있도록 하였음.

3. 수정 조례(안) : 볼임

4. 수정(안)대비표 : 볼임

조례 제 호

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균형있고 효율적인 국제통상 및 국제교류협력등의 추진을 위한 "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" (이하 "위원회"라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
2. 농업, 특화사업 등의 국제화 시책에 관한 사항
3. UR, GR 등 국제통상 대책에 관한 사항
4. 지방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
5.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
6. 국제교류 및 통상협력사업 선정과 지원
7. 지역주재 외국기관,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 사업실시에 관한 사항
8.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
9. 기타 국제통상 및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며, 위원은 민·관·산·학계의 인사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.
-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제통상협력실 총괄반장이 된다.

제4조(임기)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 및 관계공무원, 유관기관·단체 임직원의 경우는 위촉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한다.

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도 기획관리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.

제7조(실무위원회)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제통상협력실장이 되고, 위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기관 또는 단체등의 실무관계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③ 실무위원회는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며,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

제8조(심의조정사항의 처리) 도지사는 위원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자료의 협조등)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,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,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0조(공청회등 개최) 위원회는 제2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,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등의 개최와 국제통상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1조(수당등)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과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, 여비,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